

# [ 정 정 대 비 표 ]

## ■ 정정 집합투자기구 및 정정 서류

펀 드 명	BNK튼튼배당3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정 정 서 류	(간이)투자설명서
정 정 사 유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및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반영 등
효 력 발 생 일	2022년 03월 04일

## ■ 정정대비표

### [간이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[요약정보] 투자비용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및 총보수.비용 반영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2.02.16 기준으로 업데이트
[요약정보] 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2.02.16 기준으로 업데이트
[요약정보] 운용전문인력	-	-	- 2022.02.16 기준으로 업데이트

### [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<b>[요약정보]</b>			
투자비용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및 총보수.비용 반영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2.02.16 기준으로 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2.02.16 기준으로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-	-	- 2022.02.16 기준으로 업데이트
<b>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</b>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(고난도금융투자상품 명시)	가.~마. (생략) 바. <신설>	가.~마. (현행과 동일) 바. <u>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: 해당사항 없음</u>
<b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2022.03.04: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및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반영 등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-	-	- 2022.02.16 기준으로 업데이트
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	지수 삭제	<p>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]</p> <p>(1) (생략)</p> <p>(2) 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 (주식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투자 프로세스</p> <p>① 1단계 : Investment Universe(투자 후보군) 구성</p> <p>- <u>KODI(한국배당주가지수:배당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가지수) 구성종목</u></p> <p>(이하 생략)</p>	<p>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]</p> <p>(1) (현행과 동일)</p> <p>(2) 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 (주식)</p> <p>1. (현행과 동일)</p> <p>2. 투자 프로세스</p> <p>① 1단계 : Investment Universe(투자 후보군) 구성</p> <p>- 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(이하 현행과 동일)</p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<p>가. ~ 다. (생략)</p> 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(1등급)에서 매우 낮은 위험(6등급)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)은 5.20%이며,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4등급(보통 위험)으로 분류됩니다. (최근결산일 : 2021.1.13)</p>	<p>가. ~ 다. (현행과 동일)</p> 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(1등급)에서 매우 낮은 위험(6등급)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)은 5.28%이며,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4등급(보통 위험)으로 분류됩니다. (최근결산일 : 2022.1.13)</p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
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	<p>가. (생략)</p> <p>나. 과세</p> <p>(1)~(3) (생략)</p> <p>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: Class C-P 가입자</p> <p>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</p> <p>- 납입요건 : <u>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</u></p>	<p>가. (현행과 동일)</p> <p>나. 과세</p> <p>(1)~(3) (현행과 동일)</p> <p>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: Class C-P 가입자</p> <p>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</p> <p>- 납입요건 : <u>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"전환금액"이라 한다)</u></p>

		<p>- 세액공제(2014.1.1 이후 납입액 부터 적용):  <u>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</u>  - 다만, <u>종합소득금액 4천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00만원)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5%</u>  - 다만, <u>종합소득금액 1억원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2천만원) 초과하는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</u></p> <p>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: Class C-P2 가입자  - 세액공제(2015.1.1 부터) :  <u>근로자의 퇴직연금 추가부담금은 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</u></p>	<p>- 세액공제:  <u>[납입금액]</u>  -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 ① <u>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. 단, 2022년 12월 31일까지 「소득세법」제14조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</u>  ② <u>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</u>  ③ <u>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10% 또는 300만원(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중 적은 금액</u>  <u>[세액공제]</u>  - <u>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u></p> <p>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: Class C-P2 가입자  - 세액공제 :  - <u>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</u></p>
--	--	--	---

		<p>에서 세액공제 12%.</p> <p>- 다만,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00만원)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5%</p> <p>- 다만, 종합소득금액 1억원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2천만원) 초과하는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300만원 이내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2%</p> <p>※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각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</p>	<p>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, 2022년 12월 31일까지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,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.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p> <p>※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입니다.</p>
<b>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b>			
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2.02.16 기준으로 업데이트
<b>제4부.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b>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반영 등	- - 회사 연혁 추가  - 자본금: <u>260.5억</u>	- 2022.02.16 기준으로 업데이트 - 회사 연혁: <u>2021.05 자본금 증자 (+156.25억)</u> - 자본금: <u>416.75억</u>

<끝>.